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42
----------	-------

발의연월일 : 2025. 10. 20.

발 의 자 : 이연희 · 김정호 · 정준호
한민수 · 맹성규 · 김남희
이정문 · 어기구 · 문금주
박상혁 · 문진석 · 송기현
한준호 · 임미애 · 최혁진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자원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민경제의 안정과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안정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확보가 필수 불가결한 상황임.

한편,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 및 패권국가 중심의 공급망 재편 등 자원 공급망의 불안정성은 나날이 악화되어 글로벌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첨단산업의 공급망이 적절히 확보되지 않는다면 오랜시간 노력해 만든 산업경쟁력마저 약화 될 수 있어 정책적인 지원이 절실함.

글로벌 에너지·자원 확보 경쟁 심화 및 수급 위기 시에도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자원 소유권을 확보하고, 이를가공한 자원의 국내 반입에 관세를 면제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함.

정부는 할당관세 제도를 통해 국가 경제에 중요한 품목의 수입을 지원

하고 있으나, 단년도 심사 체계로 인한 지속 지원 여부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로 근본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강화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우리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주개발자원 또는 이를 가공한 자원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에너지·자원 공급망 구축을 통해 국가 자원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 93조제19호 신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 또는 이를 가공한 것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것.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 를 면제할 수 있다. 1. ~ 18. (생 략) <u><신 설></u>	제93조(특정물품의 면세 등) ---- ----- ----- ----- 1. ~ 18. (현행과 같음) 19. 「 <u>해외자원개발 사업법</u> 」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 개발사업자가 「 <u>해외자원개발 사업법</u> 」 제2조제4호에 따른 <u>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한 자원 또는 이를 가공한 것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 건에 적합한 것. 다만, 기획재 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면세를 제한할 수 있다.</u>